

※칼럼 내용은 본 신문의 論調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등촌광장



양문수 GE 그리드솔루션 부사장

오늘날 우리는 과학명명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살았던 전주에서는 정오에 부는 사이렌 소리(오포)에 낮 12시임을 알고 2부제 등교하는 날은 오포소리에 맞춰 등교 준비를 하곤 했다.

물론 2부제 등교는 교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학년이었던 1, 2학년까지 만이었다. 하긴 한 반에 80명 정도였으니 지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거다.

주 52시간 근무라는 새로운 법규가 조만간 시행되는데 언제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을까.

조선시대 아이들은 '동서남북'을 구분하는 게 가장 먼저였지만 요즘은 시간을 알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

오포소리 기준으로 대충 살던 삶은 어느새부터 정확한 시간을 요구하며 사람의 일상적 행위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됐다.

옛 선현들은 '동창이 밝아 오거나', '노고지리가 우지질 때' 일어나면 됐는데 지금은 시계의 알람에 맞춰 일어나야 한다.

고대 국가에서 천문학과 함께 신격화한 초월적 권력 출현은 하늘과 자신사이의 혈연적 관계를 입증하고자 했으며, 천체의 운행에 관한 비밀 열쇠를 손에 넣은 권력은 하늘의 아들임을 인정

받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간은 하늘 그 자체였고 주기적 흐름은 하늘의 뜻이었다.

술한 기술자들의 창의적인 지혜와 땀의 소산인 천문관측기구들은 권력이 요구하는 달력과 시계를 만들기 위한 중간재에 지나지 않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달력과 시계는 각 문명권에서 하나의 독립된 세계 또는 천하를 구축하는 기준이었고 그 독립된 천하의 주인은 이기계를 통해 신을 대신해 시간을 지배하는 권리를 선포했다.

13세기말 유럽에서 기계식 시계가 발명된 후 시계는 점차 그 정확도를 높여갔고 그에 따라 일상에 대한 지배력도 키워갔다. 유럽도시에서는 산업혁명에 앞서 시간혁명이 일어났는데 시계에 맞춰 시간을 지키는 우편마차는 증기 기관차보다 먼저 등장했다.

기계식 시계에 의해 시간은 균등한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으며 절약하거나 낭비할 수 있는 사물이 됐다.

시간이 사물로 변함으로써 신과 시간 사이 관계도 소원해졌다. 시간이 물화한 만큼 시계도 평범한 물건이 된 셈인데 현대가 과잉소비의 시대임을 감안하더라도 시계는 유난히 과소비되는 물건이다.

지금 나는 손목과 책상 위, 주머니, 거실 벽에도 시계를 차고 놓고 걸고 있다. 시간을 알지 못하면 당황하게 돼버린 탓인데 막연한 불안 상태는 현대 도시인 대다수가 공유하는 것이다.

귀하다는 것은 드물다는 것인데 흔해지면 천

해지기 마련이다. 시계가 대중화 되면서 거기에 달라붙어 있던 신의 자취도 희미해져갔다.

18세기에 바다를 항해하던 사람들처럼 GPS는 3개의 인공위성이 알려주는 시계를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의 발전이 선박에서 철도로 다시 항공교통과 GPS까지 공간의 정복에 관련된 기술의 발전이 가능하게 해줬다.

시간을 보려고 스마트폰을 들여다 볼 때마다 이에 연결된 기술을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인류의 발전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관련된 지식의 저장고는 커질수록 뒤로 감춰진다.

스마트폰에 집약된 과학적 지식이 우리를 소리지르지 않지만 그 지식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갈릴레오가 보았던 제단등의 진자운동부터 최초 인공위성이 발사될 때까지 500년의 시간이 걸렸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째깍거리는 시계의 지배를 받아 우리는 과거에 비해 훨씬 짧은 시간 단위로 살아간다.

따라서 관심을 지속하는 시간이 짧아졌고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포기하고 시계의 시간이란 추상적인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

시계의 알람소리는 여전히 내 삶에 관한 전권을 쥔 신의 목소리이다. 알람 시각을 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만 매일 알람음을 거역하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켜야 한다. 단지 알람음을 중단시킬 권리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금이 차지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에는 60%가량의 유류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휘발유 값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745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후 가격의

DIGITAL 경제산책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반달 첫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09.7원으로 전주대비 4.7원 올랐다. 지난해 평균가격이 1491.3원임을 감안하면 118.4원이나 오른 셈이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8월 첫째주부터 올해 2월 첫째주까지 28주 연속 상승한 뒤, 4월 셋째주까지 9주간 하락세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4월 넷째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휘발유 가격이 7주 연속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1700원에 육박하고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라 이리 다가 차를 집에 고이 모셔둬야 할 것 같다는 불만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인지 요즘에는 주변에서 "기름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디 차

끌고 나가기도 겁난다"는 말이 부쩍 많이 들린다. 전기차 유비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얘기에 당장이라도 갈아타고 싶지만 멀쩡한 차를 바꾸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하소연 한다.

기차도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인파가 북비는 버스·지하철을 타려니

금이 차지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에는 60%가량의 유류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휘발유 값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745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후 가격의

기름 값 무서워 차 끌기도 겁난다

"이 참에 내차를 구매할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비싼 기름 값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 마음을 고이 접는다.

연일 치솟는 휘발유·경유 가격으로 자동차 오너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오르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는 기름 값을 두고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며 불만이 커지기도 한다.

정유업체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세

10%)가 반영돼 있다.

업계에서는 유류에 대해 세금이 정액제로 부과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유가 변동에 따른 기름값의 널뛰기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고 개별 사업자들이 기름값에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우 기자 lgw009@

하도급 공정하고 정당하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전기공사와 관련해 원사업자인 A는 수급사업자인 B에게 00단지 전기공사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 B는 당초 위탁 받은 과업내용과 공사물량을 그대로 완료했음에도 당초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아울러 원사업자인 A는 수급사업자인 B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사업자 A의 직원들의 급여까지도 동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원사업자 A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위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하도급법 제11조에 제1항 의하면 원사업자는 공사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충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을 의미하며, 위탁을 할 때 당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를 의미한다.

위 사안의 경우 원사업자 A가 상기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 당초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예컨대 공사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수탁한 과업내용 및 물량의 미 이행 등 수급사업자인 B의 귀책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거자료와 여러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할 것이다.

원사업자인 A가 수급사업자인 B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원사업자 A의 직원들의 급여를 수급사업자 B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도 역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사업자 A의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를 하면 원사업자인 A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공사 계약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대금지급명령, 과징금 나아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여지면 고발도 행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급사업자 B는 원사업자인 A로부터 부당한 감액으로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절차가 복잡한 민사적 회수절차를 취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통한 조기해결, 미지급금 조기 지급유도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하도급 전문)

전기신문 electimes.com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3회) 등록 서울, 7150118
사장·발행인 이형주 편집인 이홍우 편집국장 유희덕 인쇄처 문화일보
주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87길 8 (동춘동) (우)07664 대표전화 (02)2168-1300
사장실 (02)2168-1301~2 광고마케팅팀 (02)2168-1351~7 광고문의 (02)2168-1351~7
부사장실 (02)2168-1303~4 FAX 2168-1349 FAX 2168-1349 FAX 2168-1349
편집팀 (02)2168-1312~5 경영지원팀 (02)2168-1306~8 구독문의 (02)2168-1306~8
에너지 Biz팀 (02)2168-1320~4 FAX 2168-1349 FAX 2168-1349 FAX 2168-1349
산업팀 (02)2168-1330~4 사업팀 (02)2168-1360~1
디지털뉴스팀 (02)2168-1340~2 FAX 2168-1349 FAX 2168-1349
본사 외근대응사
중국전역(중국), 베트남전지역(베트남)
기자(남/여), 총괄 E&EN 자문
매주 월·수·금요일 발행 구독료 월 15,000원 연 180,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빠르고 사용이 편리한 SMART 튜브 넘버링기 TUBE TOUCH 튜브터치
업데이트를 통한 성능 혁명 동급대비 최고의 가성비!
T-5000 기본형
동급 최강 속도(최대 50mm/초) 구현! 신제품 T-6000 출시 예정!
T-6000 고급형
M&S SOLUTION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8-21 강남B/D 11F 070-4373-8760
www.tubetouch.co.kr